



# 겸임교수제 :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현 석 | 서울산업대학교 교무처장

## I. 들어가는 말

겸임교수제는 1990년대 중반 우리 대학사회에 도입된 것으로 대학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추세를 반영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대학이 문화 및 지식 생산과 전수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약화되고 것도 사실이다. 지식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제도와 기구들도 이러한 역할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이 밖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산학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겸임교수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겸임교수제는 대학과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직된 교수인사제도를 보완하여 현장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캠퍼스를 보다 활기 있게 하는 데 기여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후발 대학의 경우 사회적인 저명인사를 겸임교수로 초빙함으로써 대학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데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문호가 보다 개방됨으로써 사회적인 전문 지식의 활용이 보다 효율화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겸임교수제의 단점과 부작용도 여전히 만만치 않게 지적되고 있다. 전임교수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에게 임시변통의 방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학 중에서 특히 사학 재단의 재정적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현장의 전문성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자격 기준이 애매하여 겸임교수의 질 관리가 소홀해 짐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낳는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 글은 겸임교수제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부작용과 폐단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겸임교수제의 취지, 도입배경, 제도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II. 겸임교수제의 취지

최근에 들어 대학의 산학협동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겸임교수제가 새삼스레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산업대학은 전임교수 80여 명에 겸임교수가 180명에 이른다는 점을 산학협동의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겸임교수제의 취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알면 겸임교수제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의 생산과 전수자로서 거의 독점적인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고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으로써 대학 이외에도 많은 다른 사회적 제도와 기관들도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 행정기관, 심지어 민간분야의 기업들까지 대학이 수행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식 분야의 다양화와 관련 지식의 전문화가 크게 심화되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비해서는 덜 체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에 토대를 둔 현장 지식과 감각이 전문성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기업이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겸임교수제의 도입에 기여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현장 전문 인력이 대학 강의를 바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현장 간의 간극을 메꾸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겸임교수제는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교수인사제도를 보완하여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현장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겸임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겸

임교수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전문가들의 배경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인 명사나 인기인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겼다. 최근에는 연구기관, 기업체, 금융기관의 중간 간부인 사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인력들이 현직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 Ⅲ. 제도적 특성과 시행 현황

우선 겸임교수제의 제도적 특성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겸임교수를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대학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 휴직자 포함)로서,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 규정도 공통적으로 전문대학 혹은 대학 교수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자격을 겸임교수의 임용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사 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몇 년간의 교육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한 대학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특수한 분야로 간주하여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사를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sup>1)</sup>

겸임교수들은 또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각 대학들이 열거하고 있는 조건들은 국가나 지방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또 기업과 민간조직 등 민간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어서 사회의 각계 각층의 전문 인력들이 잠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겸임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전임교수나 시간강사와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교과목의 강의(물론 실험실습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를 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와의 큰 차이는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원생의 논문지도나 현장실습 지도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전임교수와의 공동연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시간강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일정 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지급하는 강의로 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겸임교수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겸임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액의 재정적 보상이 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경영의 입장에서 겸임교수들에게 대폭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의 경우 겸임교수제는 재정 부담이 적은 점과 함께 고용 관리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이점 중의 하나이다. 물론 1년 이상이기는 하지만 전임교수와는 달리 대부분 단기 계약으로 임용함으로써 대학은 부수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겸임교수의 가장 큰 제도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의 교수확보를 산정방법과 관련이 크다.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겸임교원이 교수확보를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정원의 1/5을 겸임교수로 충원할 수 있으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은 정원의 1/2까지 겸임교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전임교수 확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임교수 정원의 1/3까지 겸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여러 명의 겸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이 9시간이면 전임교수 1명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점이 특히 재정 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의해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확보를 대학 정원 관리 등 대학 감독의 중요 기준으로 운영했지만, 특히 사립대학들은 겸임교수를 대거 충원하여 최소한의 교수확보를 달성하는데 활용했다.

대학에게 유리한 제도인 겸임교수제가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몇 가지의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1997년에 190명에 불과하던 겸임교수의 수가 1999년에는 1,33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0년에는 2,439명이었는데 2001년에는 2

1)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해당분야 박사 학위 소지 또는 석사 학위 및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각각 3년 및 5년의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을 요구한다. 또한 예·체능 분야나 특수분야의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배 이상 증가하여 5,823명이 되었고 이것은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전체 대학교원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1년의 경우 겸임교수 5,823명은 대학 전임교수 45,652명의 12.7%에 이른다. 또한 2002년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의하면 겸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가 전년도 3.56%에서 4.37%로 늘어났다.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는 비율인 교양 54.6%, 전공 33.1%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겸임교수제를 활발하게 이용해 온 대학들은 4년제 대학 중에서 일반대학보다 산업대학들이다. 아래 <표 1>은 이런 점들을 간접적이거나 잘 보여주고 있다. 겸임교수제 도입의 큰 취지 중의 하나가 겸임교수가 산학협동의 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대학들이 일반대학보다 겸임교수제를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래 <표 1>에서 주목할 부분은 겸임교수의 수가 전임교수의 수보다 아주 많은 대학의 경우이다. 이 대학은 최근 높은 산학협동의 실적과 성과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IV. 문제점

겸임교수제가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악용 때문에 이 제도 시행에 따르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변통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주로 해당되지만 학교 재단의 재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시간강사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교육의 질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의 담당 이외에는 겸임교수제가 산학협동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겸임교수제는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크게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가지 대학평가 제도시행에서 교수확보율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교수확보율의 하한선을 55%로 하고 있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에 대해 정원 조정의 자율성 등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대학들은 겸임교수제가 도입된 이래 재정적 부담이 큰 전임교수의 충원보다 재정적 부담과 고용관리 부담이 적은 겸임교수들을 대거 충원함으로써 교수확보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1> 대학별 전임교수와 겸임교수 현황

(단위: 명)

	전임교수		겸임교수		비고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S 대학	248	265	86	87	국립 산업대학
H 대학	70	83	160	187	사립 산업대학
D 대학	212	218	67	71	국립 산업대학
B 대학	804	839	-	-	국립 일반대학
K 대학	166	169	21	21	국립 일반대학(이공계)
C 대학	286	286	19	19	국립 일반대학(이공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인용해 보자.<sup>2)</sup> 지방 사립 대학인 D 대학은 1997년 교수 확보율이 44%였다. 전임교수 161명에 겸임교수는 단 1명이었다. 2년이 지난 1999년 이 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62.8%가 되어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하한선인 교수 확보율 55%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대학의 전임교수는 이 기간동안 7명밖에 늘지 않았으나 겸임교수가 117명으로 대폭 늘어 전체 교수 확보율이 높아진 것이다. 겸임교수들의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이 되면 전임교수 1명으로 산정해 주는 현행 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가 그 동안 겸임교수제의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겸임교수제의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이 제도가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고 많은 대학들이 사립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고, 대학 운영의 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에서 겸임교수제는 사학에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은 최소한의 교수 확보율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겸임교수제를 통해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겸임교수제로는 겸임교수 3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전임교수 1명을 유지하는 비용의 거의 1/4~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겸임교수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임교수의 충원을 기피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제도적 장점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임교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겸임교수제가 시간강사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학문후속 세대로서 전임교수나 학자가 되기 위한 도정에 있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겸임교수들은 원래 직업이 있고 부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임교수나 시간강사와는 달리 현장 전문성을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능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겸임교수들은 시간강사들의 영역

〈표 2〉 겸임교수의 상대적 연봉 수준 (1999년)

(단위: 천 원)

구분	H대	J대	I대	C대	Y대	평균
교수	57,859	56,516	58,320	60,174	57,762	58,232
전임강사	23,169	34,162	34,884	32,308	35,557	32,416
겸임교수	4,020	5,125	4,800	5,228	8,750	5,58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 중앙일보 1999년 11월 12일자

“

겸임교수제가 원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에서 세심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전임교수의 충원을 통해 교수확보율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학에서만 겸임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겸임교수를 교수확보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강의에만 치중되고 있는 겸임교수의 역할이 연구지나 공동연구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

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겸임교수제가 시간강사제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겸임교수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한 시간강사들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겸임교수제의 내재적인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 50%을 겨우 상회하는 낮은 교수 확보율과 높은 시간강사 의존율과 같은 다른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겸임교수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영역이 침식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은 겸임교수의 관리상의 문제점이다. 겸임교수는 전임교수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들은 이러한 측면 외에도 겸임교수들을 학교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용한다.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학생 유치와 대학의 이미지 제고 등에서 대학 간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졌다. 많은 후발 대학들은 유명인사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인사들을 겸임교수로 임용하여 대학 홍보 효

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겸임교수의 임용 자격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자격이 모자라거나 여건이 안 되는(실제로 직업활동에서 매우 바쁜) 사람들을 겸임교수로 임용함으로써 강의가 부실해지는 경우의 개연성도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겸임교수제가 산학협동을 증진하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겸임교수들은 강의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겸임교수가 강의 외에도 다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나 공동연구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의보다는 산학협동에 가까운 이러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야 겸임교수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 말

제도나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있지만 겸임교수제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자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의 기능이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형 시간강사제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겸임교수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겸임교수제가 원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서 세심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산학협동을 증진하고 대학 밖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립대학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충원을 통해 교수확보율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학에서만 겸임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대학에 대해 재정 부담을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겸임교수제를 악용하는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보완책과 함께 겸임교수를 교수확보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겸임교수들의 주당 강의 시수를 합하여 모두 9시간이 되면 1명의 전임교수로 산정해 주는데,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15시간 이상이 되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겸임교수 1명이 담당하는 강의 시수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일제로 한 명의 전임교수가 10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 폐단의 소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강의에만 치중되고 있는 겸임교수의 역할이 연구지도나 공동연구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겸임교수를 고리로 하여 대학과 기업(혹은 관련 기관들)간 산학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겸임교수를 개인적으로 임용된 겸임교수보다 강의료, 수당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겸임교수를 교수확보율 산정에 포함시킬 때 이러한 종류의 겸임교수만을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겸임교수가 산학협동의 고리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

#### 조현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저술로는 『WTO 협정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 『반도체 산업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